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14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황 희·강병원·기동민

김경협 · 김병기 · 변재일

서삼석・설 훈・위성곤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.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 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"미혼일 것"을 "미혼일 것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입학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입학 자격) 간호사관학교에	제3조(입학 자격)
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	
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	
1.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	1
미혼일 것 <단서 신설>	미혼일 것. 다만, 「제대군인
	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
	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
	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.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